

## 복식부기 회계제도에서 자본계정의 역할

조태형

공인회계사

회계관리는 경제적 가치있는 재화나 용역을 주고받는 거래를 기록하는 행위이다.

회계관리는 단식부기제도와 복식부기제도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단식부기제도는 현금의 수입과 지출만을 관리할 때 이용되는 제도이다. 그러나 복식부기제도는 현금의 수입과 지출뿐 아니라 물물교환거래, 신용거래, 미래예측거래 등 다양한 거래를 기록할 수 있는 제도이다.

때문에 복식부기제도는 단식부기제도에 비하여 많은 재무거래 정보를 구현할 수 있는 제도이다.

복식부기제도는 15세기에 구라파에서 창안되어 현재까지 큰 변화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제도이다.

국가나 비영리단체들은 영리목적으로 존립

되는 것이 아니며 사회적 국가적 필요에 의하여 존속하는 조직으로서 영리기업과 같이 이익금을 산출하여 투자자에게 이익금을 배당하는 제도가 없다. 이것이 비영리단체와 영리기업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나 비영리단체들의 자기자본은 손익계산 결과 이윤의 축적으로 형성되거나 반대급부 없이 기부행위에 의하여 형성된다. 이와 같이 이윤의 축적, 기부행위에 의한 축적들이 국가나 비영리단체에서는 자기자본이란 항목으로 나타나게 된다.

복식부기제도에서는 거래를 기록하기 위하여 계정과목을 설정하고 이 계정과목을 통하여 거래를 집계하여 일정시점의 재정상태(대차대조표)와 일정기간의 영업 또는 관리성과(손익계산서)를 계산하여 재무정보로서 활용

하게 된다.

일정시점의 재정상태의 측정을 위해서 설정되는 계정과목은 자산과 부채 및 자본이란 명칭으로 계정과목을 설정하고, 일정기간의 영업 또는 관리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수익(收益)과 비용(費用) 명칭으로 계정과목을 설정하여 복식부기방법으로 모든 거래를 기록 관리 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복식부기제도에서 변경할 수 없는 철칙이다.

복식부기제도에서는 거래의 기록방법인 분개법칙과 계정과목은 변경해서는 안 된다. 재정상태 측정을 위해서 자본계정이 없다면 손익계산에서 나타난 이윤 즉, 이익금은 그 기업 또는 단체에 유보되어 있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차액이 자기자본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이 형성된 자기자본을 자본이라는 계정을 통하여 재무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복식부기제도의 기본요소인 5개의 계정과목인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은 어느 하나의 계정도 없어서는 안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식부기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자치단체 회계기준 초안에서 설정하고 있는 계정과목은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에 해당) 운영성과보고서(손익계산서에 해당)의 계정과목을 4개(자산, 부채, 수익, 비용)로 구분하고 있으며 복식부기제도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본이란 명칭의 계정과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복식부기제도의 도입시점의 총자산에

서 총부채를 차감한 자본에 해당하는 차액을 '순자산'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복식부기제도에서 자본계정이 없을 경우 복식부기제도의 도입시점 이후의 자본에 해당하는 자원 또는 자산의 증가 거래는 기록할 수 없게 된다.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항목은 계정과목이 아니라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차액을 의미할 뿐이다. 순자산액은 자치단체가 복식부기제도의 도입을 위한 시점에 과거로부터 축적되어 온 내부유보이윤을 뜻하는 자기자본에 해당하는 것이다. '순자산'이란 용어는 발생주의를 택하고 있는 복식부기제도 하에서 일반적으로 유형고정자산관리 회계에서 생성된다.

대차대조표상 취득가액과 상각누계를 모두 나타내는 정보를 제공할 때 흔히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를 차감한 것을 순자산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과 혼동될 수 있다. 복식부기제도에서 재무정보는 계정과목으로 나타내게 되며 계정과목만으로 정보제공이 부족한 경우 계정과목을 보충설명하기 위하여 주석으로서 표현하고 있다.

복식부기제도에서 계정과목의 명칭은 그 계정과목이 내포하고 있는 성질의 재무정보를 축소집약(縮少集約)하여 표현하기 위하여 재무정보의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정과목의 명칭을 표현하여야 한다. 오랜 역

사를 갖고 이용되어온 자본의 개념을 뜻하는 자본이란 명칭의 계정과목을 자치단체의 회계기준 초안에서 '순자산'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기업회계 기준에서 당기순이익이란 명칭은 계정과목이 아니며 경영성과로 나타난 결과의 수치이다. 때문에 당기순이익이란 명칭으로 계정과목을 설정해서는 안된다. 경영성과로 나타난 당기순이익은 재정상태에서 자기자본의 증가로 나타나게 된다.

복식부기회계제도에서 이윤의 산정은 다음 표와 같이 이루어진다.

(시점) 재정상태표 (B/S)		(기간) 경영성과표 (P/L)	
차변	대변	차변	대변
자산	부채 · 자본	비용	수익
	이윤	이윤	

※ 이윤 = 자산 - 부채 · 자본 = 수익 - 비용

위 표에서 산출된 이윤은 계산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윤이란 계정과목을 통한 거래를 기록하여 산출되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이윤은 계정과목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윤은 자본의 증가이므로 자본계정의 대변에 기록되어 자본의 증가로 표시되게 된다.

회계기간의 경영성과표에서 나타난 이윤은 반듯이 회계기간 종료시점의 재정상태표에서 나타난 이윤과 일치하게 된다. 이와 같이 재정상태표와 경영성과표의 이윤이 일치하게

나타나므로서 계산이 정확하게 되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복식부기제도에서 분개의 8요소로 자산의 증가와 감소, 부채의 증가와 감소, 자본의 증가와 감소, 수익의 증가, 비용의 증가를 들고 있다. 이 거래의 요소를 기록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것이 분개법칙(분개원리)이다.

이 분개법칙에서는 자산과 비용의 증가는 차변에 기록하고 감소는 대변에 기록한다. 부채와 자본, 수익의 증가는 대변에 기록하고 감소는 차변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자본계정이 없는 4개의 계정(자산, 부채, 수익, 비용)만을 이용한다면 경영 또는 관리결과로 나타난 이윤을 나타낼 수 있는 계정과목이 없어 자본에 관한 증가와 감소를 기록할 수 없게 되며 이것은 복식부기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복식부기제도와 유사한 회계제도가 17세기에 고려시대 개성상인에 의하여 창안되어 이용돼 왔다. 이 개성상인에 의해 창안된 회계제도는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여 왔으나 현재의 복식부기 제도에 비하여 우수하다고 결론짓지 못하였다. 이 개성상인에 의해 창안된 회계제도는 계정과목을 매입, 매출, 채권, 채무 4개로 구분하여 기록관리하고 있었다. 이 4개 계정을 이용한 치부법은 단식부기 방법과 복식부기 방법을 혼용하고 있었으며 상품의 구입과 판매만을 기록관리 할 수 있는 경우에 활용가능한 제도

로 현금거래는 단식부기로 기록하고 신용거래인 외상거래는 복식부기방법으로 회계관리하였다. 때문에 이 개성상인에 의해 창안된 개성송도 사개치부법(四介治簿法)은 제조업 또는 다양한 거래를 관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제도는 빛을 보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만 것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단체이라 할지라도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복식부기제도의 근간인 5개의 계정과목인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분류와 자산, 비용의 증가를 차변에 기입하고 부채, 자본, 수익의 증가를 대변에 기입하는 분개법칙은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전술한 내용에 대한 결론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단체, 영리단체에서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할 경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차액은 그 단체의 자본이다. 이 자본에 대한 소유와 권리는 반듯이 특정자연인이나 법인일 필요는 없으며 따라서 의결권이나 이윤배당권 없다고 자본이란 용어를 피할 필요는 없다.

오랜 역사를 갖고 활용되고 있는 복식부기제도의 근간인 계정과목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등 5개의 계정과목은 변경해서는 안된다.

### 재정 토막상식

#### 프로젝트금융(Project 金融)

일반대출과 달리 부동산을 담보로 잡지 않고 돈을 빌려 쓰는 사람이 수행하는 프로젝트 자체를 담보 삼아 대출하는 금융. 상환재원이 프로젝트에 의한 수익에 국한되므로 프로젝트가 실패도 대출받은 사람이 더 이상의 상환부담을 지지 않는다. 이 방식의 금융은 1930년대 미국 텍사스주와 오클라호마주의 군소 석유채굴업자들에 의해 시작됐다. 이들에게는 자금과 담보력이 없었기 때문에 은행들은 당해 프로젝트의 경제성을 근거로 대출했다. 채굴업자의 신용상태나 자금력에는 일절 의존하지 않고 단지 석유의 채굴 가능성 여부, 채굴 후의 경제성에만 의존함으로써 위험이 높은 대출방법이었다. 그후 73년 1차 석유파동 이후 이 금융은 석유채굴뿐 아니라 거액의 자금이 들고 리스크가 큰 분야에까지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는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중반까지 자금의 국제유동성이 커진데다 갈수록 막대한 자금과 위험부담을 동시에 요구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이 늘어났기 때문이다.